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-879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일

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규정 「지방공무원법」 인용 조문 이동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인용 조문 수정 및 정비(안 제1조)

나. 위원회 명칭 규정(안 제3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(참조 : 총무과장, ☎ 02-450-7118, FAX: 02-411-1704, E-mail : song8474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· 법인의 경우 단체명 · 법인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